

임상의학교원 업적평가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천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의 교육·연구·진료 및 봉사활동 등에 대한 업적 평가의 방법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적 평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①이 규정에서 ‘업적’ 이라 함은 교원이 소정 기간 동안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②이 규정은 의학전문대학원 임상의학 교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12.26., 2014.06.23)

③ (삭제 2014.06.23.)

④ (삭제 2013.12.26.)

⑤기초의학교원 중 임상업무를 겸하는 교원의 경우 임상교원에 준한다.

⑥비정년트랙 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평가주기) 교원의 연간업적에 대한 평가는 매년 1년(3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단위로 시행하며, 승진, 재임용, 재계약과 관련된 업적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해당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 2 장 의학전문대학원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제4조(의학전문대학원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설치 및 조직) ①교원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6.)

③평가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12.26.)

제5조(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의학전문대학원 연구부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3-14~2 제3편 행 정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 ①평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의학전문대학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2.26.)

제 3 장 평가절차

제8조(절차) ①평가대상 교원은 총장이 정하는 업적평가 서식에 따라 업적자료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 기일까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②의학전문대학원장은 교원업적에 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교무처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12.26.)

③업적평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교무처장은 평가결과와 자료의 관리 책임을 맡는다.

④업적평가에 적용되는 최대인정 점수 및 최소합격점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9조(재심신청) ①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총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총장은 재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업적평가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재심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총장은 재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재심위원회는 재심을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 4 장 평가영역 및 방법

제10조(평가영역) 평가영역 및 업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영역 : 학생강의·실습지도·교육자료 제작·교육관련 보직·교육관련 프로그램의 참여·의무석사학위 논문지도 등을 포함한다.
2. 연구영역 : 논문·저서(번역서 포함)·학술상 수상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26., 2017.01.20.)
3. 산학협력영역 : 연구비 수혜·특허 취득·기술이전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7.01.20.)
4. 진료영역 : 진료실적 및 수련의 지도 등을 포함한다.
5. 봉사영역 : 교내·외 봉사활동·수련의 교육·학술대회·대학재정 자립기여 등을 포함한다.
6. (삭제 2013.12.26.)

제11조(평가) 임상의학 교원의 평가영역은 교육·연구·산학협력·진료 및 봉사로 구분하며, 최소합격점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3.12.26., 2014.06.23., 2017.01.20.)

1. (삭제 2014.06.23.)
2. (삭제 2014.06.23.)

제 5 장 교 육 영 역

제12조(교육영역 점수의 산출) 교육영역은 (별표2)의 교육영역 평가점수 환산표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제12조의 2 (필수 교육활동) ①교원은 재임용 기간 동안 별표2-1의 필수 교육활동 영역 중 1가지 활동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단, 본교와 교육협력병원, 의과대학의 주요보직자로 재임한 경우, 해당기간의 필수 교육활동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의 특성과 교육과정 편성 상 강의와 실습이 배당되지 않는 전공의 소속 교원은 교육기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02.22.)

② 제1항의 주요보직자는 본교 처장(부처장) 이상, 의학전문대학원 및 교육협력병원의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보직 이상을 의미한다. 다만 총장이 지명한 보직자 및 교육협력병원장이 요청한 협력병원 보직자에 한해 주요보직자로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8.02.22.)

제13조(수업평가) (삭제 2018.02.22.)

제14조(학생지도) 학생지도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3-14~4 제3편 행 정

1. 생활지도 : 지도 학생과 연 평균 3회 이상 면담을 갖고,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2. 과외활동 지도 : 동아리 등의 지도교수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상담전담교수 등 : 상담전담교수·학년담임 및 기숙사 사감으로 임명받은 경우로서 평가 점수는 월 단위로 산출한다.

제15조(실습지도) ① (삭제 2014.06.23.)

②임상의학 실습지도 점수는 상·중·하로 평가하되, 일반교수는 주임교수(임상통합실습인 경우에는 책임교수)가 주임교수(또는 책임교수)는 의학전문대학원장이 평가한다.

제16조(기타 교육 참여) 교원의 기타 교육 참여에 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교원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육 평가 영역 확대를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평가 영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08.29.)

1. PBL 참여 : 사례 개발에 제1저자 또는 협력저자로 참여하거나 튜터로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2. E-learning 콘텐츠 개발 : E-learning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 경우에 한한다.
3. OSCE/CPX 참여 : OSCE/CPX 참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02.22.)

가. CPX 시나리오 개발과 모의환자 교육: 교내 CPX 방식의 평가를 위해 CPX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모의환자를 교육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8.02.22.)

나. CPX 컨소시엄 사례개발: 서울·경기 CPX 컨소시엄에서 요청한 사례 개발에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8.02.22.)

다. OSCE 평가자: 교내 또는 국시원의 OSCE 평가자로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8.02.22.)

라. OSCE & CPX 전문교수: OSCE & CPX 전문교수로 임명되어 임상실습 과정에서 학생을 지도한 경우에 한한다. 전문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8.02.22.)

4. 교육관련 세미나/워크숍 참여 : 교내 워크숍 또는 의학 교육실이 권장하는 외부워크숍에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임상교원은 교육관련 세미나나 워크숍 참여가 필수사항으로 3점/3년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23., 2018.02.22.)

- 4-1. 교육관련 세미나/워크숍 발표 : 교내 또는 교외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서 발표를 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8.02.22.)
5. 교육관련 위원회 위원(장) : 국시대책위원회, 기타 의학교육실 소관 위원회에 등을 말하며,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된 회의에 50%이상 참석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개정 2014.06.23.)
6. 학위논문지도는 의학전문대학원 논문지도 또는 의과대학 의학연구과정 지도, 일반대학원 논문지도를 포함한다. (개정 2018.02.22.)
7. (신설 2013.12.26., 삭제 2018.02.22.)
8. (신설 2013.12.26., 삭제 2018.02.22.)
9. 외국학생 지도: 외국학생이라 함은 해외대학 소속 학생을 말하며, 외국학생이 본 대학원 국제협력센터의 Clerkship 또는 Internship 등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해당 학생을 지도한 교수에 대하여 학생 1명, 1주당 0.2점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점수 부여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국제협력센터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신설 2015.12.29.)
10. 신규문항개발: 신규문항개발은 20문항을 기본으로 하며, 최고 5점/년을 넘을 수 없다. 단, 신입교원의 경우 발령 3개월 이내에 전공분야에서 10문제를 제출하는 것을 필수로 하며 이는 교육점수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02.22.)
11. 선택의학 강의개설: 선택의학 강의개설은 책임교수로 개설한 경우에만 필수 교육활동으로 인정한다. 팀티칭인 경우 책임교수는 1/4이상 강의를 하는 경우에 개설로 인정된다. 단, 신규개설 시 과정 당 3점, 동일과정 재개설 시 과정 당 2점을 부여한다. 책임교수와 부책임교수가 지정된 경우, 신규개설은 책임교수 2점, 부책임교수 1점, 재개설은 책임교수 1점, 부책임교수 1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8.02.22.)

제 6 장 연구 영역

제17조(연구영역 점수의 산출) ①연구영역은 (별표3)의 연구영역 평가점수 환산표와 (별표4)의 연구논문 및 저술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②의무석사 논문은 학위 취득시 년 1편에 한하여 국내 저명 학술지 원저 1편과 동일하게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의무석사 논문으로 교육영역 등에서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12.26.)

제18조(연구논문) 연구논문에 관한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논문은 학술단체가 발행하는 전문학술지 게재논문에 한하여 인정하며, 논문별책을 게재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다.
2. 원저의 평가는 저자수와 저자구분에 따라 산정 기준을 달리한다.
3. 종설의 경우, 국내학술지는 학진 등재 후보지 이상(기타 국내학술지 발표는 증례와 동일하게 취급함), 국제학술지는 국제일반학술지 이상에 게재된 경우에만 원저로 인정한다.
4. 증례의 경우에는 원저의 50%만 인정하며, 국제저명학술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국제저명학술지에 등재된 경우에는 원저의 평가에 2배를 가산한다.(국제저명학술지는 국내외의 전문 학술 단체·대학 또는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것으로서 논문 게재당시에 국제적인 학술잡지 평가기관에서 간행하는 학술잡지 색인 중 SSCI, SCI 또는 SCIE(단 Impact Factor가 있는 경우)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다만, Impact Factor 점수에 따라 차등 배점하며 점수 구간은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13.12.26.)
6. 국제일반학술지 : 국제저명학술지를 제외한 국내외 국제 학술지를 말한다.
7. 국내저명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말한다.
8. 국내일반학술지는 심사를 거쳐 게재하는 전국규모 또는 사단법인 학회나 한국연구재단에 가입된 학술단체에서 연간 4회 이상 발간하는 학회지나 학술지를 말한다.
9. 연구업적물의 유효기간 산정은 승진임용 및 재임용의 경우 임용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업적평가기간 내에 게재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교정 중인 논문)가 첨부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19조(저서) ①저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출판저작물로서 국제표준번호(ISBN)가 부여된 서적, CD 등을 말한다. 다만, 개인논문 모음집 형태의 저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저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그 인정 또는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제전문학술서: 외국의 전문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를 말하며, 전공분야의 이론·학설을 정립하여 독창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저서로서 충실한 각주와 다수의 인용주가 포함된 대학 교재용

목적 외의 학술서를 말한다.

2. 국내전문학술서: 국내의 전문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를 말하며, 전공분야의 이론·학설을 정립하여 독창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저서로서 충실한 각주와 다수의 인용주가 포함된 대학 교재용 목적 외의 학술서를 말한다.

3. 대학교재 및 번역서: 대학교재는 대학의 강의를 위한 전공분야 혹은 교양분야의 교재 및 시청각 매체를 말한다. 번역서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외국의 전공 관련 학술서를 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서적을 말하며, 국내에서 출판된 저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출판사에서 출간한 경우에는 50%의 가중치를 둔다. 다만 외국의 주석서, 편저서, 기타 저서 등을 번역한 경우에는 기타 저서로 평가한다.

4. 공동저서인 경우에는 인정환산율을 적용한다.

제20조(학술발표) (삭제 2013.12.26.)

제 7 장 산학협력 영역

제21조(산학협력영역 점수의 산출) 산학협력영역은 (별표4-1)의 산학협력영역 평가점수 환산표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개정 2017.01.20.)

제22조(외부수탁연구) ①교원의 교외연구비 수주 실적은 본교 산학협력단 및 길병원을 통하여 수탁받아 연구비 중앙관리를 받는 순수연구비(세부위탁비 지급액을 제외) 중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대학정보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실적 산정기준은 자연과학 및 이공계열 교원의 경우 입금액 기준 100만원당 0.5%(단, 순수 산업체연구비의 경우 100만원당 1.5%)을 가산하고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교원의 경우 입금액 기준 100만원당 2%(단, 순수 산업체연구비의 경우 100만원당 6%)을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만, 반환액에 대한 감점은 없다. (개정 2017.01.20.)

②교외연구비를 본교 교원이 공동으로 수탁한 경우 참여 교원의 연구비 수탁액 산정은 입금액 기준 교외연구비를 기준으로 연구책임자가 50%, 그 외의 참여 교원은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 교원 수로 나머지 교외연구비를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01.20.)

제23조(지적재산권) ①특허의 발명권자로서 특허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특

2-3-14~8 제3편 행 정

허권자가 본 대학교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특허와 국외특허를 중복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것으로 하나만 인정한다.

(개정 2017.01.20.)

②국제특허는 G7국가(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에서 취득한 것만 인정하고,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특허는 국내특허로 인정한다.

(개정 2017.01.20.)

③실용신안은 기술평가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만 해당점수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권리가 가천대학교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개정 2017.01.20.)

④SW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프로그램등록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권자가 본 대학교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7.01.20.)

제23조의 1(기술이전료) 기술이전은 지적재산권 및 연구수행 과정중 특허를 획득한 기술 등을 외부 제3자에게 실시(전용실시, 통상실시, 양도)한 실적을 말하며, 본 대학교 회계에 세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학교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때 100만원당 5%로 계산한다. 다만, 기술이전센터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실적만 인정한다. (신설 2017.01.20.)

제23조의 2(현장실습지도 및 기술·경영자문) ①현장실습지도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해 지도교수로 참여한 실적을 말하며, 기술·경영자문은 산업체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한 실적을, 가족회사관리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승인된 가족회사 모집실적을 의미한다. 다만, ②항 내지 ④항의 실적을 통합하여 연간 최대 30%까지 인정 가능하다. (신설 2017.01.20.)

②현장실습지도 인정기준은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 현황 기준에 따라 기업체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학점이 부여되는 과정으로 4주(160시간)이상의 현장실습을 대상으로 하되 학생 1인당 1%를 인정한다. 다만,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은 제외한다. (신설 2017.01.20.)

③기술·경영자문 실적은 가족회사에 대한 기술경영자문실적에 한하여 각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회당 5%를 인정한다. (신설 2017.01.20.)

④가족회사관리는 가족회사 1개 사 모집 당 2%를 인정한다. (신설 2017.01.20.)

제23조의 3(신의료) 의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로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연구비수혜실적 100%를 인정한다. (신설 2017.01.20.)

제 8 장 진료 영역

제24조(진료영역 평가 등) ①진료영역은 (별표5)의 진료영역 평가점수 환산표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②진료영역의 평가를 위하여 교원인사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영역 교원으로 구성하는 진료업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③제2항의 진료업적평가위원회는 교육협력병원장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진단 및 치료법의 개발) (삭제 2013.12.26.)

제 9 장 봉사 영역

제26조(봉사영역 점수의 산출) ①봉사영역은 (별표6)의 봉사영역 평가점수 환산표에 따라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②수련의 교육평가는 다른 대학 또는 진료과의 의료인을 포함한 연수교육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주임교수가 소속과 교수의 수련의 지도능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③의료인 교육평가는 학술대회 및 학생강의를 제외한 의료인 대상 학술강의만 인정하되 학회 및 지역사회 연수교육을 포함한다.

제 10 장 업적평가활용

제27조(승진 필요점수) ①승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1 또는 교신저자인 원저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교원 직급별 승진요건은 평가규정 (별표3-1)의 직급별 승진요건에 따른다. (개정 2014.06.23.)

③승진에 필요한 연구영역평가 점수는 평가규정 (별표3)의 연구영역 평가점수 환산표에 따른다.

④임용 전 경력을 승진소요연수에 합산하는 경우 그 기간 내의 논문은 1회에 한하여 연구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재임용의 필요점수) ①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 평가기준은 (별표1)의 업적평가 기준표에 의하며, 최소 합격점수 기준 이

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06.23.)

② 자병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해당병원의 원장의 평가에 의해 연구 및 교육영역 점수를 진료점수로 대치할 수 있다. 다만, 자병원 병원장은 모병원장이 평가를 한다.

제 11 장 보 칙

제29조(평가결과의 활용) 총장은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를 성과급·연구보조비 지급, 우수교원 표창 또는 교원징계 양정의 감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연구업적집 발간) 총장은 교원업적평가 결과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 업적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교원업적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근무하는 경우에 교원업적평가위원 및 간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열람신청) 업적 평가결과에 대하여 해당 교원은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3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승진요건의 적용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개정된 재임용 및 승진 기준 적용은 차기 재임용 및 승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재직 중인 분자의학 교원은 개정 이전 생명과학부 교원의 기준을 준용하며, 개정된 규정은 재임용 및 승진 기준 적용은

차기 재임용 및 승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이 규정 제10조 제5호의 규정은 생명과학부 및 분자의학 교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심사항목 및 평가 기준은 교원인사규정 및 일반학문영역 교원업적평가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조교수 재직 교원의 경우 부교수 승진에 한해서만 (별표7)의 환산표를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재직 중인 기초의과학부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 임용의 경우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1회에 한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재직 중인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 임용

2-3-14~12 제3편 행 정

관련 별표 1의 적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1회에 한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 2)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재직 중인 교원의 12조 1 의무적용은 최초로 도래하는 1회에 한해서 면제한다.

(별표1) 업적평가 기준표(3년 기준)

가) (삭제 2014.06.23.)

나) 임상의학 교원 (개정 2013.12.26., 2017.01.20., 2018.02.22.)

평가영역	최소합격점수	영역간 대치
교육	15점	불가
연구/산학협력	200%	불가
진료	30점	불가
봉사	1점	가능

주1. 교육, 연구/산학협력 및 진료 분야는 영역간 대치가 불가함

주2. 교육관련 세미나나 워크숍 참여 3년에 3점 필수(개정 2018.02.22.)

주3. (삭제 2017.01.20.)

주4. 재임용 기간 동안 필수 교육활동 영역 중 1가지의 활동에 참여함

(신설 2017.01.20.)

다) (삭제 2014.06.23.)

2-3-14~14 제3편 행 정

(별표 2) 교육영역 평가점수 환산표

가) 임상 및 기초 의학 교원 (개정 2014.06.23., 2015.02.13., 2015.12.29., 2018.02.22.)

항목	세부내역	점수	비고
의학전문대학원 및 대학원 강의	강의시간	0.5점/시간	영어강의는 2점/시간
임상의학 실습지도	실습지도 평가	상 : 6점/3년 중 : 4점/3년 하 : 2점/3년	일반교수는 주임교수(통합임상실습인 경우에는 책임교수)가 평가한다. 주임교수(또는 책임교수)는 의학전문대학원장이 평가한다. 학생주치의 담당은 1점/년 추가점수를 부여한다.
기타 교육 참여	PBL 사례개발	10.0점/사례	-교육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참여는 필수사항으로 3점/3년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교육관련 위원회 위원장에는 의학교육부원장을 포함한다. -교육관련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된 회의에 50%이상 참석한 경우에 인정한다. -OSCE&CPX 전문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규문항개발은 모의고사문항을 의미하며, 20문항을 기본으로 하고, 최고 5점/년을 넘을 수 없다. 단, 신입교원의 경우 신입교원 워크숍 3개월 이내에 10문제를 제출하는 것을 필수로 하며 이는 교육점수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선택의학 과정에서 책임교수와 부책임교수가 지정된 경우, 신규개설은 책임교수 2점, 부책임교수 1점, 재개설은 책임교수 1점, 부책임교수 1점을 부여한다. 필수 교육활동은 책임교수로 개설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PBL 사례개발 협력	0.5점/사례	
	PBL tutor	2.0점/사례	
	E-learning 콘텐츠 개발	2.0점/사례	
	CPX 시나리오 개발과 모의환자 교육(교내)	5.0점/사례	
	CPX 컨소시엄 사례개발(교외)	10.0점/사례	
	교내 OSCE 시험감독	0.5점/시간	
	국시원 OSCE 평가자 참여	5점/회	
	OSCE & CPX 전문교수	5점/년	
	교육관련 세미나/워크숍 참여	0.5점/시간	
	교육 관련 세미나/워크숍 발표	1점/1회	
	신규 문항 개발	0.2점/문제	
	선택의학 과정 개설	신규개설: 3점/강좌 재개설: 2점/강좌	
	교육관련 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2.0점/년 위원: 1.0점/년	
	논문지도 (의학전문대학원, 의과대학 의학연구과정)	3점/학생/년	
일반대학원 논문지도	1.5점/학생/년		
외국학생지도	0.2점/학생/주		
학생지도	생활지도(학생지도교수)	0.5점/학생/년	상담 전담교수에는 기숙사 사감도 포함한다.
	의예과 생활지도 (학생지도교수)	0.5점/학생/년	
	과외활동지도	0.5점/년	
	상담전담교수	1.0점/년	
	학년담임교수	1점/년	

주1. 사례 개발이라 함은 PBL 진행을 위한 학습 자료가 되는 사례와 사례를

사용하여 PBL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튜더용 지침서 개발을 의미한다. 사례 개발에는 제1저자 또는 공동 제1저자와 협력자로 참여한다. 제1저자는 주저자로 직접 집필하고 학생들에게 사례에 대한 강의 및 학생의 학습정도를 평가하는 교수를, 공동 제1저자는 1저자에 준하는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받은 교수를, 협력자는 사례에 대한 자문 및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사례 개발에 협력하는 교수를 의미한다. 단, 공동 1저자는 PBL 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하며, 점수의 50%를 반영한다. 협력자는 제1저자가 PBL위원회에 신청하여 위원회에서 사례개발에 기여하였음을 인정 받아야하며, 제12조의 1 필수 교육활동 영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02.22.)

주2. 튜더라 함은 PBL학습을 원활히 진행시키고 각 사례에서 요구하는 학습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연자 또는 촉진자로 참여하는 교수를 말한다. (개정 2018.02.22.)

주3. E-learning은 강의실과 같은 전통적인 교육 공간을 넘어 웹과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생이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교육 자료를 콘텐츠라고 한다. 자료 제작 및 동영상 강의를 대표적인 예이다. (개정 2018.02.22.)

주4. 팀 바탕 학습(TBL : Team-Based Learning)은 교수가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와 함께 과제물을 사전에 배포하고 연습을 하게 한 후 수업 시작 전 개인시험을 통하여 학습 준비를 점검하도록 한 후, 수업에서 동일한 문제를 팀이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를 팀 간 비교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팀 중심으로 학습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8.02.22.)

주5. (삭제 2018.02.22.)

주6. (개정 2015.02.13., 삭제 2018.02.22.)

나) 생명과학부 교원 (삭제 2013.12.26.)

다) (삭제 2014.06.23.)

2-3-14~16 제3편 행정

(별표 2-1) 필수 교육활동 (신설 2018.02.22.)

- PBL 사례개발 (총1회)
- CPX 컨소시엄 사례개발 (총1회)
- PBL 튜터(총2사례)
- CPX 시나리오개발 및 모의환자 교육(총2회)
- 교내 OSCE 평가자 참여 또는 국시원 OSCE 평가자 참여(총2회)
- CPX & OSCE 전문 교수
- 선택의학 과정 개설(총2회)-책임교수만 인정
- E-learning 콘텐츠 개발(총2회)
- 신규문항개발(최소 20문항: 105가지 증상별 증례문항 A 형 또는 R형, 멀티미디어 문항)
- 논문지도(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학연구과정(의과대학) 지도
- CBL (총3회)
- TBL (총3회)
- Flipped learning 등 새로운 교육방법 시도 (총3회)
- 기타 필수 교육 활동 수행 : 교육기획위원회가 요청하고 학장이 승인한 교육프로그램

(별표 3) 연구영역 평가점수 환산표 (개정 2013.12.26., 2017.01.20.)

항목	세부내역		점수	비고
연구논문	국내학술지	원저, 종설	100%/건	1. 원저 또는 증례논문의 세부평가기준은 별표4와 같다. 2. SCI급(SCI, SCIE) 학술지는 국내학술지의 200%를 인정한다(단 Impact Factor가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 3. SCI 미등재 국외학술지는 국내학술지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4. 석박사학위논문은 최근 2년이내의 논문만 인정하며, 다른 학술지 게재와 중복되는 경우는 한가지만 인정한다. 5. 국내학술지의 종설은 학진등재후보지 이상인 경우에만 원저와 동일하게 인정되며, 기타 학술지 발표는 증례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6. SCI급 등재지는 IF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배점한다 1) IF 3.0 미만 - 200% 2) IF 3.0 이상 7.0 미만 - 300% 3) IF 7.0 이상 10.0 미만 - 400% 4) IF 10.0 이상 - 600%
		증례	50%/건	
	SCI급등재잡지	원저, 종설	200%/건	
		증례	100%/건	
	학위논문	박사 석사	200% 100%	
	저술	국내 전문 학술서		
국제 전문 학술서		300%/건		
대학교재 및 번역서		100%/건		
저서의 개정판		50%/건		
학술상 수상	국가 포상 및 국제 학술상		50%/건	
	국내 학회 및 학술단체상		30%/건	

주) (삭제 2013.12.26.)

2-3-14~18 제3편 행정

(별표 3-1) 직급별, 영역별 승진요건 (개정 2013.12.26., 2017.01.20., 2018.02.22.)

구분	임상
조교수 → 부교수	<p>승진 소요기간 중 연구업적 1100% 이상이고 주저자 논문이 700%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I급(SCI, SCIE) 원저 2편 또는 SCI급(SCI, SCIE) 주저자 합이 400% 이상 - 단, 연구업적 총점 중 600%까지 산학협력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산학협력 실적이 200% 초과일 경우, 초과 실적에 대해서는 주저자 논문 점수로 대체하고, 400% 초과일 경우, 초과 실적에 대해서는 SCI 급 주저자 논문점수로 대체한다.
부교수 → 교수	<p>승진 소요기간 중 연구업적 1100% 이상이고 주저자 논문이 800%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I급(SCI, SCIE) 원저 3편 또는 SCI급(SCI, SCIE) 주저자 합이 600% 이상 - 단, 연구업적 총점 중 600%까지 산학협력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산학협력 실적이 200% 초과일 경우, 초과 실적에 대해서는 주저자 논문 점수로 대체하고, 300% 초과일 경우, 초과 실적에 대해서는 SCI 급 주저자 논문점수로 대체한다.

* 주저자 :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승진 소요기간이라 함은 승진 임용일을 기준으로 최근 6년(12학기)으로 한다. (신설 2014.06.23.)

(별표 4) 연구논문 및 저술, 논문발표의 세부평가기준

가) 원저연구 영역 논문의 환산법

구분	제 1 저자 또는 교신저자	제 2 저자 이상
점수	100%	100%/저자수*

* 예) 국내 학술지 원저에 교신저자를 포함해 저자가 5명인 경우 : 10점/5명=2점

나) 증례연구 영역 논문의 환산법

구분	제 1 저자 또는 교신저자	제 2 저자 이상
점수	5점	5점/저자수*

* 예) 국내 학술지 증례에 교신저자를 포함해 저자가 5명인 경우 : 5점/5명=1점

다) 공동저서 인정 환산율

저자수	1 인	2 인	3인	4인 이상
적용률	100%	70%	50%	30%

(별표 4-1) 산학협력영역 평가항목별 배점표(신설 2017.01.20., 개정 2018.02.22.)

구분	상세구분	업 적 내 용	배점
산학 협력 연구 실적	외부수탁연구(비)	국책과제 수주	100만원당 1%
	지식재산권	국제특허 등록	300%
		국내특허 등록	100%
		실용신안 등록	50%
		상표권 등록	30%
		디자인권 등록	30%
	SW개발	SW등록	30%
	기술이전	기술이전 완료	100만원당 5%
	교원창업	자회사(신규창업)	200%
		자회사(산학단수익금 계산)	100만원당 1%
		학교기업(산학단수익금 계산)	
		실험실창업	100%
		벤처창업·신기술창업	150%
	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 등록	100%

주1. 국책과제는 중앙정부연구비(중앙정부 및 각 부처 산하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와 지자체연구비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만을 포함한다. 단순 장학금·재정지원사업(BK플러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사업 등),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연구장려금, 매월 지원되는 보수 성격의 교내지원 연구비 등은 제외한다. 총괄책임자의 연구비는 제외하고 세부과제책임자의 연구비(입금액)를 인정한다. (개정 2018.02.22.)

(별표 5) 진료영역 평가점수 환산표

등급	점수	비고
A	45	
B	40	
C	35	
D	30	
E	25	
F	24미만	

2-3-14~22 제3편 행 정

(별표 6) 봉사영역평가점수 환산표

항목	세부내역	점수	비고
교내봉사	학교 및 병원 보직교수	5점	1. 학교의 보직교수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처장, 부처장, 부속기관 및 연구소장, 실장, 부장까지 인정한다. 2. 병원의 보직교수는 의료원장, 병원장, 부원장, 부장, 센터장, 주임과장까지 인정한다. 3. 각 위원회 위원 및 간사의 경우 연 2점까지 인정한다. (단, 교육관련 위원회는 교육영역평가점수에서 산정한다.) 4. 이 항목의 상한선은 연 5점으로 한다.
	주임교수, 부설 연구소장	3점	
	학교 및 병원의 위원회 위원 및 간사	2점	
교외활동	학회 회장단, 평의원, 이사	2점	1. 이 항목의 상한선은 연 5점으로 한다.
	국제 학술대회 조직위원	2점	1. 2개국이상 참가한 경우에만 해당됨. 2. 진행 및 준비 등 조직위원회 책임자급에 한한다.
	학회지 편집위원을 제외한 임원	0.5점	1. 이 항목의 상한선은 연 5점으로 한다.
전공의교육	교실특강/연수교육	0.5점/회	교실에서 주관한 연수강좌 등에 강사로 참가한 경우에 한하며, 연간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전공의 교육 평가	상 : 3 중 : 2 하 : 1	1. 주임교수가 소속과 교수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2. 수련의가 없는 진료과는 '중'으로 평가한다.
의료인교육	의료인 대상 학술 강의	0.5점/회	1. 이 항목의 상한선은 연 2점으로 한다.
기타 강연 및 교육	강연 및 교육	0.2점/시간	1. 공공기관과 기업체 강연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참여하여 강연 및 교육하였을 경우로 한정한다. 2. 이 항목의 상한선은 연 5점으로 한다.

(별표 7) 승진 업적 평가 관련 년도별 평가 기준 환산표(2016년 평가부터 적용)
 (신설 2013.12.26., 2014.06.23)

가. 부교수 승진 평가 기준표

승진 심사 기간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임상 의학	연구총점 : 930% (주저자 논문 : 700%) 필수요건 ① SCI급 주저 자논문 1편	연구총점 : 960% (주저자 논문 : 700%) 필수요건 :① SCI급 주저 자 원저 (또는 중설) 논문 1 편	연구총점 : 1000% (주저자 논문 : 700%) 필수요건 ① SCI급 주저 자 원저 (또는 중설) 논문2편 ② 또는 SCI급 주저자 원저 (또는 중설) 논문의 합이 400% 이상	연구총점 : 1030% (주저자 논문 : 700%) 필수요건 ① SCI급 주저 자 원저 (또는 중설) 논문2편 ② 또는 SCI급 주저자 원저 (또는 중설) 논문의 합이 400% 이상	연구총점 : 1060% (주저자 논문 : 700%) 필수요건 ① SCI급 주저 자 원저 (또는 중설) 논문2편 ② 또는 SCI급 주저자 원저 (또는 중설) 논문의 합이 400% 이상

2-3-14~24 제3편 행정

나. 교수 승진 평가 기준표

승진 심사 기간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임상 의학	연구총점 : 930% (주저자 논문 : 750%) 필수요건 ① SCI급 주저 자 논문 2편 ② 또는 SCI급 주저자 논문의 IF 합이 5.0 이상	연구총점 : 960% (주저자 논문 : 750%) 필수요건 ① SCI급 주저 자 원저 (또는 중설) 논문 2 편 ② 또는 SCI급 주저자 원저 (또는 중설) 논문의 IF 합 이 5.0 이상	연구총점 : 1000% (주저자 논문 : 750%) 필수요건 ① SCI급 주저 자 원저 (또는 중설) 논문 3 편 ② 또는 SCI급 주저자 원저 (또는 중설) 논문의 합이 600% 이상	연구총점 : 1030% (주저자 논문 : 750%) 필수요건 ① SCI급 주저 자 원저 (또는 중설) 논문 3 편 ② 또는 SCI급 주저자 원저 (또는 중설) 논문의 합이 600% 이상	연구총점 : 1060% (주저자 논문 : 750%) 필수요건 ① SCI급 주저 자 원저 (또는 중설) 논문 3 편 ② 또는 SCI급 주저자 원저 (또는 중설) 논문의 합이 600% 이상